



### 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 작성합니다.
  - 가. 사업용 자산(토지를 제외합니다)
  - 나.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는 자산
  - 다.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, 주식, 그 밖의 자산
2. ⑨상실된 재산가액란·⑩상실 전 재산가액란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,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3.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시 자산총액은 전체 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4.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$$\text{재해상실비율} = \frac{\text{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}}{\text{최초 재해 전 자산가액} + \text{최종 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}}$$

※ 세액공제는 재해손실액을 한도로 합니다.